

예술대학 내규 개정 전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예술대학장에게 위임한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의 교수, 연구와 유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제 2 장 편 제

제 1 절 교육조직

제3조(학사조직 및 학위과정) ①「학칙」 제5조에 의하여 본 대학에 설치된 학사조직 및 각 학사조직에 설치된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 가. 미술학과 : 학사과정
- 나. 디자인학과 : 학사과정
- 다. 무용학과 : 학사과정
- 라. 영상학과 : 학사과정
- 마. 연극예술학과 : 학사과정
- 바. 의상학과 : 학사과정

2. 일반대학원

- 가. 미술학과 : 석사과정
- 나. 디자인학과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다. 무용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라. 영상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마. 연극예술학과 : 석사과정
- 바. 의상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사. 예술학협동과정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아. 융합정보디자인학과 : 석사과정
- 자. 게임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3. 특수대학원(2021.02.28. 폐지)

가. 디자인대학원 : 석사과정

제4조(학장 등) ①「학칙」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육조직, 행정조직 및 부설연구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학장을 둔다.

②<삭 제>

③학장을 보좌하여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학과장(주임교수)을 둔다.

제 2 절 위원회

제5조(대학운영위원회) ①「학칙」 제7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의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장 및 각 학사과정의 학과장과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학인사평가위원회) ①「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대학인사평가위원회(이하 “인사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장과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4 내지 10명의 본 대학 소속 교원 중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인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 심사

⑤인사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부설연구기관

제7조(부설연구기관) ①「학칙」 제12조에 의하여 본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퍼포먼스와 디자인사이언스 연구소
2. 트랜스미디어연구소
3. 게임센터

②제1항의 각 연구기관은 소장 및 센터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제 3 장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7조의2(이수구분·학점수 인정 및 성적환산) ①학장은 학과장이 승인한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성적을 반영한다.

②학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학사과정

제 1 절 졸업평가

제8조(졸업평가) ①학칙 제40조에 의거한 본 대학의 학사과정 학과별 졸업평가 실시여부 및 유형은 별표3과 같다.

②학과별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마다 학과장이 정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년도 개시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구논문) <삭 제>

제8조의3(실기발표) ①졸업논문 형태가 실기발표인 학과의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형식에 맞춰 작품을 준비하고 지정된 일정에 심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학과장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실기발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 후 소정기간 기한까지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기발표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 2 절 장 학

제9조(장학금 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여 대학운영위원회에 선발이 위임된 성적우수장학금과 교외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추천대상을 요청하여 학장에게 선발이 위임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10조(선발기준) ①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해당 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이를 우선순위에 둔다.

②동점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의 선발기준을 상회하는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중 이수학점이 많은 자
3. 직전학기 제1전공성적 이수학점이 많은 자 중 제1전공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중 이수학점이 많은 자

제11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과별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에게 학장이 지급한다.

② 학과장은 장학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학년별 인원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추천한다.

제12조(교외 장학재단장학금) ① 본 대학의 교외 장학재단장학금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학기 재학생 중 학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교외 장학재단 지정 기준 적용
2. 장학 선발기준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 선발
3. 기타 학장이 교육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거나, 학교 및 대학의 명예를 드높여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장 일반대학원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13조(학점의이수) ① 2016학번 이후 신·편입학한 자 중 학위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자는 수료 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학과에서 정한 학점과 이수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과정 수료가 제한된다.

② 2020학번이후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학위논문심사신청이 제한된다.

제 2 절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제14조(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설치된 학과의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전공운영) ① 전공명칭은 학과의 의견을 들어 학과학사관리위원회 및 예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한다.

제 3 절 선수학점

- 제16조(선수학점)** ①입학이전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에 비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과장은 선수학점을 부과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②선수학점은 선수학점 및 인정학점 부과·관리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단,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각 학과별 최대 선수학점을 학위과정별로 공히 12학점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③학과장은 최대 선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별로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을 선수학점으로 부과한다.
- ④학과장은 학생이 정규과목 또는 선수과목 이수를 통해 선수학점 부과의 목적을 조기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부과한 선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 ⑤학과장은 선수학점 부과, 조정 내역을 행정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논문제출자격시험

- 제17조(외국어과목)** ① 외국어과목은 영어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한다.
- ②외국어과목은 언어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18조(외국어과목의 면제)** ①학장이 예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장이 면제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영어과목

- 토플(TOEFL) : 550점(PBT), 215점(CBT), 80점(IBT)이상 취득자
- 토익(TOEIC) : 700점 이상 취득자
- 텡스(TEPS) : 309점 이상 취득자
-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 영어권국가에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대상 국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강좌에 합격한 자

2. 한국어과목(적용학과: 디자인학과, 영상학과, 의상학과, 예술학협동과정, 융합정보디자인학과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이상 취득자

②<삭 제>

- 제19조(전공과목)** ①전공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석박사통합과정 :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 ②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학과별 전공과목은 별표2와 같다.

④전공과목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절 학위논문

제20조(논문지도교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외한다.

제21조(예비심사)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석박사통합과정 :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②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소속 학과 전공별 전임교원 및 대학원 재학생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형식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절차) 학위청구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1종으로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논문요지를 한글로 써야 한다.

제23조(논문심사) ①논문심사는 공개발표 및 심사 1회와 최종심사 1회로 총 2회 실시한다.

②논문심사의 1차 심사인 공개발표에는 전임교원 및 대학원 재학생이 참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논문내용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사전 요청으로 공개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공개발표 후 심사대상자와 심사위원들 간의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위한 토론에는 심사대상자를 제외한다.

④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 후 그 결과보고서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기간경과생의 예비심사 및 논문심사 신청자격) <삭 제>

제24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의거,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2기 종료 전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재학 중 면제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재학 당시 논문제출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료 후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면제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충족한 면제요건을 포함하여 인정하되, 미충족한 잔여 면제요건은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수대학원 (2021.02.28. 디자인대학원 폐지)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25조(학점의이수) ①2016학번 이후 신·편입학한 자 중 학위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 이내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학과에서 정한 학점과 이수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과정 수료가 제한된다.

②2020학번이후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하고, 미이수시 학위논문심사신청이 제한된다.

제 2 절 선수학점 및 특별학점 취득

제26조(선수학점) ①교육과정 운영상 선수학점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입학자는 디자인대학원장이 선수학점을 부과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선수학점은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논문제출자격시험과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선수학점은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4기 종료 전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 3 절 논문제출자격시험

제27조(외국어과목) ①외국어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료생 및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2. 외국어과목은 한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3. 외국어과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응시원서를 행정실에 제출 (인터넷 응시신청)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디자인대학원 외국어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2011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

③외국인은 한국어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④외국어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학장이 예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장이 면제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토플(TOEFL) : 550점(PBT), 215점(CBT), 80점(I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 700점 이상 취득자

3. 텡스(TEPS) : 309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5. 영어권국가에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대상 국가는 해당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6.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강좌에 합격한 자

⑥<삭 제>

제28조(전공과목) ①전공과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료생 및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전공과목은 한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사력에 따른다.
- ②디자인대학원의 전공과목 시험은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 ③전공과목은 디자인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④전공과목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⑤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A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디자인대학원 패션학전공은 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전공과목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 4 절 논문지도

제29조(논문지도교수)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원(소정서식)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 ②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하여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논문지도) ①재학생은 4학과와 5학기(2개 학기)에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재학 중 2개 학기에 논문지도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2개 학기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은 자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③2개 학기에 걸친 논문지도 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논문지도교수가 판정하여 보고한 자는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지도교수 1인당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논문작성을 위하여 실험실습이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31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디자인대학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추가 6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칙시행세칙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및 추가 6학점을 이수할 경우에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②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4학기 말 소정기간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를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재학 중 면제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재학 당시 논문제출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료 후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를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면제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충족한 면제요건은 포함하여 인정하되, 미충족한 잔여 면제요건은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논문심사) ①논문의 심사는 매학기 말(5월말,11월말)에 실시하며 논문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한다.

②논문 및 구두시험은 각 학장이 지정하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학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날(심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인쇄하여야 한다.

제 5 절 특수대학원 전공

제33조(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 디자인대학원 학과 및 전공명은 별표 4와 같다.

제 7 장 개 정

제34조(개정) ①학장은 학칙의 범위 안에서 예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내규를 개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선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자는 입학당시 부과 받은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의2(외국어과목)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디자인대학원 폐지(2021.02.28.) 이후 잔존학생은 폐지 전 특수대학원 규정(제6장)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과 및 전공

계열	학과	전공	전공(영문명)
예 · 체 능	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Communication Design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서피스디자인	Surface Design
		브랜드디자인매니지먼트	Brand Design Management
		무용학과	Dance
	의상학과	복식사	Historic Costumes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복식미학	Fashion Aesthetics and Culture
		패션마케팅·의상심리	Fashion Marketing·Psychology of Fashion
		의복설계생산	Apparel Product Development
	영상학과	영상학	Film and Visual Studies
학과간 협동과정	예술학협동과정 (공연예술협동과정)	예술학 (공연예술학)	The Arts (Performing Arts)
	5개 학과	12개 전공	

(별표 2) 일반대학원 학과별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과목리스트

학과명	학위	과목명 (교시별로 1과목 선택)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미 술	석사	한국미술사특강1	미술비평사	현대미술론	-
디 자 인	석사	커뮤니케이션방법론, 글로벌마켓연구, 21세기문화경제와디자인	크리에이티브디자인사유, 아트팩트브릭세미나, 환경디자인론1, 디자인이슈, 패키지&브랜딩, 디자인경영사례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1, 써피스디자인1, 텍스타일디자인프로세스, CMC브랜드이미지전략, 크리에이티브프로젝트, 프로젝트세미나	-
	박사			디자인세미나1, 디자인세미나2, 디자인세미나3, 디자인세미나4	
무 용	석사	한국무용사세미나, 서양무용사세미나	무용비평세미나	한국무용워크샵 컨템포러리댄스워크샵 발레워크샵	-
	박사	무용사회학	무용페다고지연구	무용미학	-
영 상	석사	영상매체미학	미디어컨버전스시대의미학	인터랙션:기술,예술,디자인	-
	박사/석박통합	영상매체미학	미디어컨버전스시대의미학	인터랙션:기술,예술,디자인	-
연기예술	석사	카메라연기연출, 연기연출연구, 연기 및 연출 방법론 연구	피지컬드라마창작워크샵, 현대공연예술미학	공연연출, 교육연극과커뮤니케이션	-
의 상	석사	한국복식사특론, 패션과현대사회특론, 패션디자인특론, 복식미학특론, 스포츠아웃도어웨어설계생 산 (택1)	복식문화컨텐츠, 복식사회심리학연구, 패션디자인문화연구, 복식조형론, 패션과지식재산권연구 (택1)	동양복식사특론, 패션산업세미나, 현대패션디자인분석, 패션이미지와미디어, 의복설계특론, (택1)	-
	박사	한국복식사특론, 소규모패션비즈니스세미나, 패션디자인특론, 복식미학특론, 스포츠아웃도어웨어설계생 산 (택1)	한국복식문화사연구, 패션과현대사회특론, 패션디자인문화연구, 복식조형론, 패션과지식재산권연구 (택1)	동양복식사특론, 패션과소비자행동특론, 현대패션디자인분석, 패션이미지와미디어, 의복설계특론 (택1)	에스닉코스튬특론, 패션마케팅전략세미나, 패션비평연구, 패션과예술전략, 첨단스마트의류설계특 론 (택1)
	석박통합	한국복식사특론, 패션과현대사회특론, 패션디자인특론, 복식미학특론, 스포츠아웃도어웨어설계생 산 (택1)	복식문화컨텐츠, 복식사회심리학연구, 패션디자인문화연구, 복식조형론, 패션과지식재산권연구 (택1)	동양복식사특론, 패션산업세미나, 현대패션디자인분석, 패션이미지와미디어, 의복설계특론 (택1)	에스닉코스튬특론, 패션과소비자행동특론, 패션비평연구, 패션과예술전략, 첨단스마트의류설계특 론 (택1)
예술학 협동과정	석사	예술미학, 예술사회학 (택1)	세계공연예술사, 조형예술학특론, 세계음악사 (택1)	예술정책과제도, 예술경영의이해 (택1)	-
	박사	예술미학, 예술사회학, 문화융합비교연구 (택1)	세계공연예술사, 조형예술학특론, 세계음악사 (택1)	예술정책과제도, 예술경영의이해, 예술학통계방법론 (택1)	-
융합정보 디자인	석사	디자인과빅데이터의이해,데이 터 기반디자인연습, 디자인커뮤니케이션과네트워 크분석세미나 (택1)	정보디자인과데이터시각화1, 심화정보디자인과서비스디자인, 창의적사고와앙트레프레너십 (택1)	디자인트렌드분석, 디자인과데이터분석론, 소비자트렌드&데이터 (택1)	-

(별표 3) 학사과정 학과별 졸업평가 유형

학과	제출 방법
미술학과	실기발표
디자인학과	실기발표
무용학과	실기발표
영상학과	실기발표
연기예술학과	실기발표와 지정과목 이수 병행
의상학과	실기발표

※ 의상학과 실기발표는 2024년도 2학기부터 폐지

(별표 4) 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

대학원	학 과	전 공
디자인대학원 (2021.02.28. 폐지)	디자인학과	패션학전공, 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환경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별표 5)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

대학원	학 과	면제요건 (택1)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1. 석사와 지도교수(2인) 공동 학술지 저술 - KCI 등재지 또는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 석사 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수료학점 이외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3. 교내 전시실 또는 공인된 화랑에서 석사학위청구전이 명시된 개인전 전시 - 전시된 개인 작품 전체의 사진자료/작품설명 등이 수록된 ‘석사학위청구전 개 인도록 및 자료집’ 제출
	영상학과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지도교수가 포함된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 석사 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수료학점 이외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연기예술학과	1. 수료학점 이외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의상학과	1. 석사와 지도교수(2인) 공동 학술지 저술 - KCI 등재지 또는 SCI(E) 및 SCOPUS 학술지 -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 석사 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수료학점 이외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이수
	예술학협동과정	1. 석사와 지도교수(2인) 공동 학술지 저술 - KCI 등재지 또는 SCI(E) 및 SCOPUS 학술지 -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 석사 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수료학점 이외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융합정보디자인학과	1. 석사와 지도교수(2인) 공동 학술지 저술 - KCI 등재지 또는 SCI(E) 및 SCOPUS 학술지 -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 석사 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수료학점 이외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위 면제요건은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 적용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응시 및 합격 필수

※미술학과, 무용학과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미운영